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4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김성주·송옥주·최혜영

남인순 · 강선우 · 정춘숙

고영인 · 최종유 · 이은주

허종식 · 서영석 · 이용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 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 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 수급자 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호 단서).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단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2
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	
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	l
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	
가 65세 이후에 <u>「노인장기요</u>	<u>혼</u> 자서 사회생
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u>활을 하기 어려운</u>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